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방송법」이 개정(제18866호, 2022. 6. 10. 공포, 12. 11.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
 -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향상에 부합할 것
 -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기술중립 서비스의 제공)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“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
2.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3조의5(기술중립 서비스의 제공) <u>법 제9조의4제3항에서 “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</u> <u>1.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</u> <u>2.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</u>